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확대〉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876호)

2024.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2
V . 입법의 재정영향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3. 12. 8.

다. 회 부 일 : 2023. 12. 11.

II. 제안이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이고,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를 한 경우에 전액 세액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포함)되나, 최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전액 세액 공제 범위를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하여 2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에 대해서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5백만원까지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

IV. 검토의견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확대

현 행	개정안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대상: 지자체 -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 10만원 이하: $\text{기부금} \times 100/110$ ·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 $10\text{만원} \times 100/110 + (\text{기부금} - 10\text{만원}) \times 15/100$	☐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차등 세액공제 ○ 기부대상: 지자체(인구감소지역 제외) -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부대상: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 20만원 이하: $\text{기부금} \times 100/110$ · 2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 $20\text{만원} \times 100/110 + (\text{기부금} - 20\text{만원}) \times 15/100$

☐ 개정안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공제액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은 거주자가 광역·기초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91%(110분의 100)¹⁾,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²⁾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 제외 /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³⁾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 89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1) 국세 세액공제액(10만원 이하분의 경우 110분의 100)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국세·지방세 세액공제액을 합하면 기부액이 전액 공제됨.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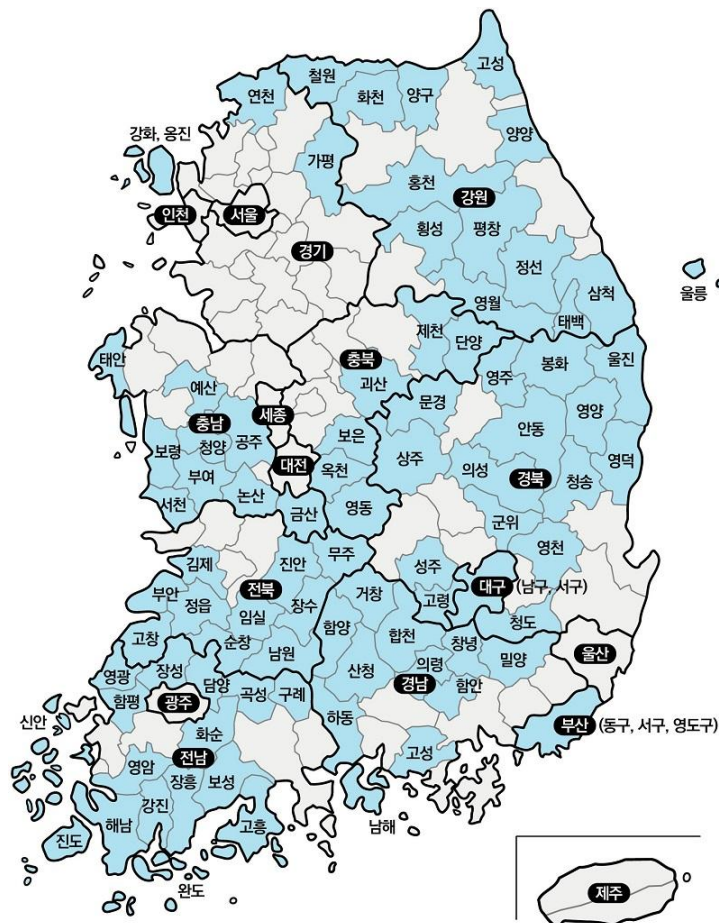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③ (생략)

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으며, 동 고시는 인구감소지역을 5
 년마다 다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개정안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의 재정 확보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기부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한정하여 20만원 이하
 의 기부금까지는 기부금의 91%(110분의 100)⁴⁾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임.

4) 국세 세액공제액(10만원 이하분의 경우 110분의 100)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산
 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국세·지방세 세액공제액을 합하면 기부액이 전액 공제됨.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고향사랑 기부금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보다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도입 당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⁵⁾ 결과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관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41.3%) 외에,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지방자치단체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33.0%, ‘중소도시를 포함하여 도시지역은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8.4%,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17.3%로 나타나, 모금 지방자치단체를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게 나타난 바 있음.

둘째,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지표 중 하나가 재정자립도⁶⁾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소액기부를 촉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지방 간 격차 해소 등에 기

5) 국승용, 김창호. (2022).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연평균인구증감율,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인구감소지역 외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세액공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해당 지역들의 추가적인 지원요청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산광역시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1.1%로 동 지역에 포함된 동구(17.3%), 서구(13.6%)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낮음.

둘째, 인구감소지역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5년마다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⁷⁾ 지정 주기마다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었다가 제외되는 지자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차이는 지자체가 장기적인 모금 계획과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연중 고시됨에 따라 같은 연도 내에서도 어느 시점에 기부하냐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7)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부칙 제2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주기) 고시일로부터 5년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V. 입법의 재정영향

-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으로 인해 소득세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2023년 처음 도입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원수 및 기부금액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하다는 의견임⁸⁾.

문 의 처
02)6788-5154

8)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고.